

제 4 조 [등기·등록·기타의 대항요건 등]

채무인수인은 아래[별표]의 기재물건 위에 설정된 담보권에 관하여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인수로 말미암은 변경 등기·등록·기타 대항요건 구비 등의 절차를 밟고 그 증빙서류를 채권자에게 제출하기로 합니다.

제 5 조 [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]

-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- ②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, 변경, 이전,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- ③ 채권자는 제2항의 청구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.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,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.
 - 1.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
 - 가.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: 채권자 나.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: 채무자 또는 설정자
 - 2.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
 - 가. 근저당권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: 채권자 나.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채무자 또는 설정자
 - 3.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: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
- ④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,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,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.

제 6 조 [담보제공과 보증의 동의]

- (1) 채무자를 위한 담보제공자와 보증인은 이 채무인수 약정에 동의하고 원담보계약 및 보증계약이 같은 내용으로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효력을 가짐에 동의하며 채무인수인의 제4조에 의한 변경 등기 등 절차에 협력하기로 합니다.
- (2) 채무인수인이 원약정서에 의한 거래를 계속할 경우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제공자와 보증인은 채무인수인이 계속되는 거래로 말미암아 채권자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도 담보나 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합니다.

제 7 조 [계약의 해지]

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변경 등기·등록·대항요건 등이 이 계약일로부터 1개월내에 완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은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해체할 수 있기로 하되, 채무자의 채무 및 담보제공자·보증인의 채무와 책임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합니다.

● 채무인수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. (기재 예시 : 1.수령함 2.들었음)

| | |
|--|--|
| 1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은 확실히 수령하셨습니다까? | |
| 2.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? | |

| 원약정서 및 현재 채무의 표시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설 정 순 위 | 물 건 표 시 | 소 유 자 |
| | |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본 인 확 인 및 인 감 대 조 | <p>인지세 납부내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출금 4천만원 이하 면제 • 대출금 10억원 이하 15만원 • 대출금 5천만원 이하 4만원 • 대출금 10억원 초과 35만원 • 대출금 1억원 이하 7만원 | <p>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 2002년 26호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